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33호)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적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0. 13.

다. 회 부 일 : 2025.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1년 4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계획을 국제사회에 발표함에 따라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 2030년까지 67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농가에서 출하한 농축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국가 및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의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
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은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포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①·② (생략)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는 국가 등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과 바이오에너지 농작물 등 생산·공급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¹⁾,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및 산림자원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현행법 제47조제1항을 근거로 2012년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시행해오다, 2014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식품부 고시)을 제정하여 동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현행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평균 배출량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하고 있음에도,²⁾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고시 수준의 규정만으로는 정책 현장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임.

이에 개정안은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활성화를 넘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정책 수립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저탄소 농축산물’과 관련 산업의 개념이나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³⁾ 구체적 운영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할

2) 실제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운영규정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저탄소 농산물 인증 농가는 2020년 4,700호에서 2024년 11,028호로 약 2.3배 증가하였으며, 인증면적도 같은 기간 5,657ha에서 14,209ha로 크게 확대되었고, 온실가스 감축량 역시 2020년 약 7만7천 톤에서 2024년 11만1천 톤 CO₂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적 감축 효과가 확인되고 있음. 아울러 저탄소 축산물 인증 또한 2023년 105건에서 2025년 338건으로 확대되는 등 농가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참고자료 1]

3) 참고로, 저탄소 인증제 운영규정에서는 “**저탄소 농축산물**”을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해당 품목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적은 농축산물로 정의하고 있음.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가 현황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유효 농가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인증건수 (건)	706	798	974	1,130	1,252
농 가 수 (호)	4,700	5,753	8,098	9,085	11,028
인증면적 (ha)	5,657	6,751	9,329	10,338	14,209
감축량 (톤CO ₂)	77,769	80,205	86,238	99,875	111,641

□ 저탄소 축산물 인증 유효 농가

구분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3	한우	-	-	-	2	2	4	2	7	37	10	6	1	71	105
	한우	1	-	-	8	3	1	1	4	6	6	-	4	34	
'24	돼지	1	1	1	9	-	-	35	5	10	5	33	4	104	
	젓소	-	-	-	7	5	-	9	18	6	-	1	6	52	
'25	한우	-	-	-	7	-	1	1	12	21	-	-	-	42	
	돼지	-	1	3	12	1	1	40	12	64	7	39	7	187	
	젓소	-	-	-	98	-	1	3	1	4	1	-	1	109	
계		2	2	4	143	11	8	91	59	148	29	79	23	599	